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- 의안번호 : 제2336호
- 제출일자 : 2021년 4월 2일
- 회부일자 : 2021년 4월 6일

2. 제 안 이 유

- 조례의 근거법령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21. 6. 10. 시행)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각종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명).
- 나.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, 용어를 변경함(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, 제12조 및 제17조).
- 다. 근거법령의 제정(21. 6. 10. 시행)에 맞추어 조례를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1. 21.~2. 10.)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각종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산림자원법’) 제20조의2에 따라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¹⁾.
-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) 및 제20조의2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)²⁾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,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지난해 관련법으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도시숲법’)이 제정되어³⁾ 동 조례가 근거로 하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제20조의2는 삭제되고, 관련사항은 ‘도시숲법’ 제11조와 제13조로 규정되었으며, 오는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.
-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.

1)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(의안번호 10-01576, 원안가결) - 제출일(2020.5.25.), 의결일(2020.6.30.), 공포일(2020.7.16.)

2)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17.6.3] [법률 제14360호, 2016.12.2. , 일부개정]

3)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21.6.10.] [법률 제17420호, 2020.6.9. , 제정]